

## 제 1 장 총칙

### 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(적용 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2 장 구성

### 제 3 조(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

### 제 4 조(권한)

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
### 제 5 조(의장)

-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 장 회의

### 제 6 조(회의의 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2 월, 3 월, 4 월, 6 월, 8 월, 10 월, 12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 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개최한다.

### 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②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서면으로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 3 항의 청구를 했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 8 조(소집절차)

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자를 정하고 회의 전일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단,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는 위 절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 9 조(제안과 의안 설명)

- ① 이사회 의제는 각 이사가 발의하며 각 이사가 이사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대표이사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.
- ②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사회 부의요청서와 부의안건 내용을 이사회 담당임원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부의된 의안의 설명은 당해 의안을 주관하는 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.

### 제 10 조(성립과 의결)

-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
### 제 11 조(부의사항)

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과 보고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.

### 제 12 조(긴급사항)

-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에 따라 긴급 조치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 13 조(관계인의 참석)

의장은 필요 시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### 제 14 조(의사록 등의 작성)

- ① 이사회 제안부서장은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, 이사회 주관부서장이 의사록을 최종 검토 후 확정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, 그 결과,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, 출석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.
- ③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보관하며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.

## 제 4 장 보칙

### 제 15 조(전문가 조력)

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### 제 16 조(사외이사의 경비)

사외이사에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사회 업무 관련 자료와 정보 조사 비용, 참석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■ 이사회 운영 규정 [별표 1]

## 이사회 결의사항과 보고사항

### 1.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

#### 가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- 1)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, 영업보고서 승인
- 2) 정관의 변경
- 3) 이사, 감사의 보수와 성과금과 퇴직금에 관한 사항
- 4) 이사, 감사의 선임과 해임
- 5) 자본의 감소
- 6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
- 7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등
- 8)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
- 9) 기타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

#### 나.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

- 1)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
- 2) 이익 소각 결정
- 3)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, 주식 사무 수수료의 수수방법 등 결정
- 4) 주주명부 폐쇄 결정(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기타 필요한 경우)
- 5) 사채 모집, 전환사채 발행사항 결정,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사항 결정, 차관도입
- 6) 이익잉여금 처분 결정, 준비금 자본전입 결정
- 7)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선임
- 8) 이사, 감사의 보수와 성과금에 대한 세부운영기준
- 9) 비등기 임원의 보수와 성과금에 관한 사항

- 10) 주요 직책 임원에 대한 임명 승인(재무, 기획)
- 11) 중간배당의 결정
- 12) 일반공모증자의 결정
- 13)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
- 14) 국내외 지점, 출장소, 사무소, 현지법인의 설치·이전·폐지
- 15) 자사주 매입 및 처분 결정
- 16)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제·개정
- 17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)
  - 가)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
  - 나)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
  - 다)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
- 18) 전환사채 청구기간 조정
- 19) 신주 인수권 행사기간 조정
- 20)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
- 21) 준법 지원인 임명, 준법통제기준 제정과 개정
- 22) 안전 및 보전에 관한 계획**
- 23) 기타 관련 법령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**

#### 다.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

- 1) 중장기 사업계획 승인
- 2) 1 억원 이상 사외 신규출자와 출자지분의 처분
- 3) 50 억 이상 사업성 투자 승인
- 4) 출자회사 담보, 보증 등의 채무부담 인수
- 5) 지급보증, 채무인수 및 우발채무를 수반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(책임준공 미이행 시 대출원리금 손해배상 사업 포함)
- 6)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
- 7) **중요한 자금 차입(장기 차입, 연간 차입금 한도 설정 포함)**
- 8) 1 억원 이상 채권제각
- 9) 1 천만원 초과 기부 찬조
- 10) 10 억원 이상 비유동자산의 취득과 처분
- 11) 10 억원 이상 연구과제 승인
- 12)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과 폐지
- 13) 1 억원 이상 자금 대여**
- 14) 기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**

## 2.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

- 가. 경영성과와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 상황

나. 기타 관련 법령상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